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5407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나5407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가소108129 판결

전 문

원고,항소인 A 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호진

피고,피항소인 B 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이영대

변론 종결 2020. 11. 19

판결선 고 2020. 11. 26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선고 2020가소10812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16,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 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2. 22. 16:25경 서울 중랑구 E 부근 중국동 쪽에서 용마산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을 보고 1차로로 차로변경하여 추월한 직후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흰색 실선에 걸쳐 갑자기 정지하였고, 이를 본 피고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금 24,540,750원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G 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G 심의위원회는 2019. 11. 18. 원고 차량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 원고로 하여금 위 24,540,75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재심의결정도 동일).

원고는 2020. 2. 6. 피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월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을 뒤쫓다가 급제동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다가 제동을 늦게 한 데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40% 상당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급액 24,540,750원 중 40%에 해당하는 9,816,3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1차로로 추월한 후 2차로로 진행중이던 피고 차량 바로 앞으로 차로변경하면서 흰색 실선에 걸쳐 갑자기 정지한 점, 피고 차량으로서는 원고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갑자기 실선에 걸쳐 정지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 차량의 승객이 넘어져 다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피고 차량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판사 황정수판사 최호식